

## 답 변 서

사 건 2000드단000 이혼 등

원 고 김〇〇

피 고 이◇◇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1. 원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원고는 피고가 소외 박OO과 부정행위를 하였음과 원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2. 그러나 피고는 박OO과 부정행위를 한 바 없습니다. 피고가 박OO을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위 박OO과 원고는 직장 동료로서 가끔 업무적인 연락을 하는 사이일 뿐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성으로서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이외에 사적으로 만난 적도 없습니다.

3. 또한 피고는 원고의 부모에 대하여 매달 20만원씩 용돈도 드리고 매 명절 빠지지 않고 찾아가 인사드렸으며, 원고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을 때 옆을 지키면서 병수발을 들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의 부모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4.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이 정한 이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 ○. ○. 위 피고 이◇◇ (서명 또는 날인)

○○가정법원 가사 제○단독 귀중

		orkr//	내한법률구조공단
제출병	법 원	본안소송 계속법원	
제출기	부수	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답변/ 제	서 의 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피고가 공시 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의	의	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민사소송법 제148조, 제428조, 제430조).	
7]	타	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  ·청구취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  ·청구원인: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 구분,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	